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8호 2017. 11. 15. (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47호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
○ 하동군 조례 제2248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하동군 조례 제2249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250호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7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7-16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이재*)	24
○ 하동군 고시 제2017-162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지에스산업개발외1)	25
○ 하동군 고시 제2017-163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경남산림환경연구*)	27
○ 하동군 고시 제2017-165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28
○ 하동군 고시 제2017-16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김현*)	29
○ 하동군 고시 제2017-16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0
○ 하동군 고시 제2017-170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이은*)	32
○ 하동군 고시 제2017-17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에스케이텔레*외 1)	33
○ 하동군 고시 제2017-17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5
○ 하동군 고시 제2017-17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경제수산과 외1)	38
○ 하동군 고시 제2017-177호	재해위험저수, 댐 지정해제 고시	40
○ 하동군 고시 제2017-18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섬진강(화개천합류지)하상정비공사) .	41
○ 하동군 고시 제2017-183호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변경) 고시	42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7-1091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4
○	하동군 공고 제2017-1087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3
○	하동군 공고 제2017-1145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4
○	하동군 공고 제2017-1155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71
○	하동군 공고 제2017-1157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7-1068호	2017년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내역 공시 송달공고	77
○	하동군 공고 제2017-1084호	2017년 상상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기간 연장 공고	82
○	하동군 공고 제2017-1085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87
○	하동군 공고 제2017-1119호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90
○	하동군 공고 제2017-1133호	재해위험저수지, 댐지정해제 고시 행정예고	91
○	하동군 공고 제2017-1165호	주민발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의 개정 청구 대표자증명 서 교부취지 공표	92
○	하동군 공고 제2017-1166호	주민발의「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 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취지 공표	93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47 호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제7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정한다.</p> <p>1. <u>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u></p> <p>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③ · ④ (생 략)</p>	<p>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u>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u></p> <p>2. (현행과 같음)</p> <p>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u>사회복지법인</u></p> <p>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공익법인</u></p> <p>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u>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u></p> <p>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u></p> <p>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u>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48 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500퍼센트”를 “4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5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1,3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9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1,1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3회” 를 “2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다목 중 “50미터” 를 “20미터” 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50미터” 를 “20미터” 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중 “50미터” 를 “20미터” 로 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 중 “50미터” 를 “20미터” 로 한다.

별표 18 제2호다목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허용한다.” 로 한다.

별표 18 제2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 중 “다목, 마목 및 자목” 을 “자목” 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준주거지역 : <u>500퍼센트</u>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u>1,500퍼센트</u>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u>1,300퍼센트</u>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u>900퍼센트</u>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u>1,100퍼센트</u> 이하 11. ~ 21. (생략) ② (생략) <u><신 설></u></p>	<p>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u>400퍼센트</u> --- 7. ----- <u>800퍼센트</u> ---- 8. ----- <u>800퍼센트</u> ---- 9. ----- <u>600퍼센트</u> --- 10. ----- <u>600퍼센트</u> --- 11.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3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u></p>

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제38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 설>

④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38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
회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

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 차. (생략)

2.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련)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20미터 -----

라. ~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1 .

가.-----

----- 20미터 -----

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
외한다)

나. ~ 아. (생략)

2. (생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
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
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
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
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
외한다)

다. ~ 아. (생략)

2.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20미터 -----

다.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1 .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 차. (생 략)

2. (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1. (생 략)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20미터 -----

마. ~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제외한다. 다만, 농촌

<후단 신설>

라. ~ 너.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1. (생 략)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및
자목

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
식점은 허용한다.)

라. ~ 너. (현행과 같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다만,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
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
관에 한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다만, 농촌융복합산
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
에 한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 2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자목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49 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보조금, 지방채
2. 타 회계의 전입금
4. 부지 매각 수익금
5.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등 건설비용

2. 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소송비용 및 부채경비의 상환
5. 그 밖의 원리금 및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되는 비용

제4조(준속기한) 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하동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0 호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기타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박물관의 전시관, 체험관, 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명칭은 하동야생차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2. 박물관의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시
2. 자료의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의 연구물 제작·배포 및 타박물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증 및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관리
6.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운영

제5조(운영관리) 박물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매주 월요일(전시관), 1월 1일, 설, 추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미리 박물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 2.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대관) ①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13조(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수집) 군수는 자료를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대여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다만, 기탁의 경우에는 기탁 기간까지만 권한이 유효하다.

제15조(유물의 기증·구입)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증 받거나 구입하고자 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른다.

제16조(자료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자료는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열람 등) 군수는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를 박물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대여) ① 자료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공립·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②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 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차(茶) 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하동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과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연구·사회교육·홍보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자문 및 초청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편의시설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기념품 및 농특산물 판매점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허가번호 제2017-161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이재석	1944.02.20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3855-210	440220-1*****
	주 소	
	하동군 옥종면 원해길 65	

장소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1(구), 인근지번: 청룡리 767(목)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07㎡ (또는 m²)

목적 건축물(축사)

기간 2017. 10. 12. ~ 2022. 10. 11.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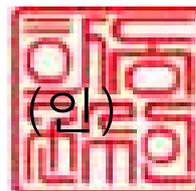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허가번호 제 2017-162호

허가 대상자	성명	지에스산업개발(주)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10-3602-0068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727-1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100 m ²	78 m ²
목적	진출입로	진출입로
기간	2017·09·19· ~ 2022·09·18·	2017·09·19· ~ 2022·09·18·
변경사항 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허가번호 제 2017-162호

허가 대상자	성명	박 영 미	생년월일(성별)	1960.01.18
	전화번호	010-8608-4716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남 광양시 광영로 141, 105동 406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면적	36 m ²	52 m ²
	목적	진출입로	진출입로
	기간	2016.08.02. ~ 2021.08.01.	2016.08.02. ~ 2021.08.01.
	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7-163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하 동 군 수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대표자 (성 명)	주소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소하천명		무지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북천면 화정리 1598번지		
	면적	11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7.10.16. ~ 2017.12.31		
	목적 및 사유	사방사업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복구)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2041	화개면 덕은리 820-8	중부	186831.30	257456.90	2017-10-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168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김 현 속	1964.02.05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7333-8881	640205-2*****
	주 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동천길 40-5	

장소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715-16(구) 인근 : 술상리 271(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2㎡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7. 10. 19. ~ 2022. 10. 18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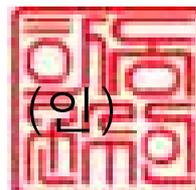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인)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40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54-50	20171019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5-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652-6	20171019	20090702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985-3, 98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417	20171019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0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03-11	20171019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587-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400-61	20171019	2009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 95-1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36-30	20171019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 95-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36-36	20171019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산 156-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불무길 174-7	20171019	20090302	불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48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당2길 129-58	20171019	20070618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셨던 고운선생의 영정을 옮겨오면서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허가번호 제 2017-170호

허가 대상자	성명	이 은 영	생년월일(성별)	1978.10.21
	전화번호	010-9192-3004	사업자등록번호	781021-2*****
	주소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12, 101동 302호(대근하버빌타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면적	3 m ²	70 m ²
	목적	진출입로	진출입로
	기간	2017.04.21. ~ 2022.04.20.	2017.04.21. ~ 2022.04.20.
	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171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에스케이텔레콤(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70-8709-2516	104-81-37225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2-6번지	

장소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781-16(구), 인근지번: 가덕리 119-36(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0.01㎡ (또는 ㎡)

목적 통신전주건식

기간 2017. 10. 27. ~ 2027. 10. 26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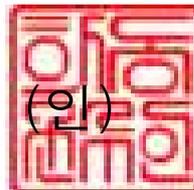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171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해관산업개발(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2587-7893	195411-0031141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5-1	

장소

하동군 적량면 관리 960(구) , 인근 : 관리 645(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4㎡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7. 10. 27. ~ 2022. 10. 26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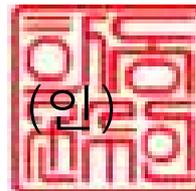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 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 동 군 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년 월 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 소재지 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제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514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998-22	20171031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3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54-42	20171031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259-1, 26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69-24	20171031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41-4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12	20171031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구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3-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1-12	20171031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590-24	2017103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78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래실길 234-8	20171031	20070618	마을 뒷산이 고래등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216-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101	20171031	20070618	대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6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길 10-10	20171031	20090302	대치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리 677-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92	20171031	20070618	부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305, 산124-3, 30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184	20171031	2009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화개면 대성리 142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17-1	20171031	20090302	의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고전면 성천리 929-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지소2길 23-33	20171031	20090302	옛날 종이를 생산하던 마을 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하동읍 두곡리 775-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91	20171031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176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하동군수(경제수산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51 - 623 - 0015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장소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807-1(구) , 인근 : 동산리 1211-2(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0㎡

(또는

㎡)

목적

LPG가스 배관 매설

기간

2017. 11. 01. ~ 2027. 10. 31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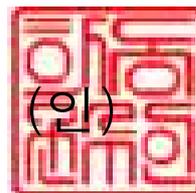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하 동 군 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176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정 수 영	1957.11.10.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3869-2288	571110-1*****
	주 소	
	경남 하동군 부춘길 66	

장소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98(구), 인근: 부춘리 669(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1㎡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7. 11. 01. ~ 2022. 10. 31.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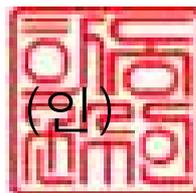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하 동 군 수 (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해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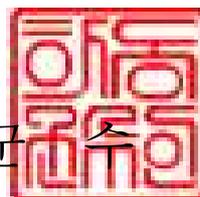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해제사유	관리자
		구역면적	총저수량 m ³	제당			
				높이	길이		
추동	경남 하동군 옥 중면 대곡리 일원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중서	경남 하동군 적 량면 서리 일원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하곡	경남 하동군 적 량면 동리 일원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7-18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시행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구 분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비 고
			시 군	읍 면	동 리				
사 업 명	섬진강 화개천 합류지 하상정비공사	섬진강	하동	화개	탐리	지류화천 합류부 퇴적토사 제거하 여 유수소통 단면 확대로 하천재해 예방	하상정리 m ² m ³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하동군수(화개면장)

└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4.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 10백만원

북천코스모스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변경)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규정에 의하여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2단계)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1. 사업목적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사업명 :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3. 위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옥정리, 사평리 방화리 일원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북천역 주변정비 - 광장 및 주차장 조성
 - 커뮤니티센터 - 커뮤니티센터 조성 (A = 638.94m²)
 - 지역소득증대
 - 한우판매장 - 한우판매장조성 (A = 120.96m²)
 - 지역경관개선
 - 코스모스경관테마 - 폐열차 리모델링 3량 및 조경 등
 - 코스모스공동예술 - 북천역 복원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5. 총사업비 : 7,000,000천원(국비4,900,000천원, 지방비2,100,000천원)
6. 사업예정기간 : 2012년 05월 ~ 2018년 12월

7. 용지매수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비 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총면적	편입면적	
하동	북천	직전	586	2	답	231	231	
			588	14	대	53	53	
			588	15	답	325	325	
			572	2	철	174	174	
			573		철	258	258	
			586	1	철	1,048	1,048	
			588	9	철	414	414	
			588	13	철	27	27	
			588	16	철	364	364	
			586	3	철	4,563	4,563	
			1477	2	철	468	468	
			588	7	철	231	231	
			588	8	대	130	130	
			588	11	철	40	40	
			588	12	철	17	17	
			571	1	철	1,649	561	
			574	1	철	975	137	
			573	2	철	903	76	
				옥정	440	1	철	474
계						12,344	9,591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055-880-5141),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055-880-2516)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에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추가(안 제1조)

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삭제(종전 제2조)

다. “자원봉사수요자” 를 상위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로 수정 (안 제2조)

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일하게 내용 추가 (안 제3조)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추가(안 제17조)

바. 실비지급에 있어 “군수,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필요한” 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이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안 제2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880-2242~4, FAX 880-2019, e-mail : zxcw werg@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4조)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2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중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실비지급)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원봉
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공공	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
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	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

할을 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
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
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원봉사활동-----

-----.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시
켜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과 발
전은 물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
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
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
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
다.

1. -----이

-----.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제1
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란

-----.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
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3. -----란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와 노인 및 아동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6.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8. 인권옹호·부패방지·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9.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신 설>

-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11.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 (생 략)

제6조 ~ 제11조 (생 략)

제13조 (생 략)

제14조 (생 략)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 · 제18조 (생 략)

<신 설>

10. 문화 · 관광 ·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3. ----- 국외봉사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p>제19조 · 제20조 (생략)</p> <p>제21조(실비지급) 군수,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 (생략)</p> <p>제23조 (생략)</p>	<p>3. <u>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u></p> <p>4. <u>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u></p> <p>5. <u>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u></p> <p>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p> <p>제20조(실비지급)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 할 수 있다</p> <p>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p> <p>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p>
---	---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 지급기간 연장(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제1호)
 - 첫째아이 : 2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후 후년 분할지급)
→ 1,0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후 9년간 분할지급)
 - 나. 결혼장려금 지원 신설(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6항, 안 제4조제1항제3호)
 -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부부) 500만원(첫회 200만원, 3년간 분할지급)
 - 지원대상 : 결혼당사자 여자의 경우, 가임기여성(만49세까지)에게만 적용

다. 신청기한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 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인구증대추진위원회 당연직위원 추가 (안 제6조제4항)

- 농촌진흥과장 : 귀농귀촌지원시책 추진

마. 법제 해석의 혼돈 등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842~4, FAX 880-2159, e-mail durpdl@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결혼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1항제3호를 같은 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결혼장려 지원사항 : 결혼장려금

제4조제2항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을 “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지원	(생 략)	(현행과 같음)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 정 과	

제6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을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농촌진흥과장” 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가목중 “기준으로” 를 “전,” 으로 하고, 같은 표제1호 지원대상나목중 “둘째아이 이상 분할지원” 을 “분할지원” 으로 하며, 같은 호 지원내용중 “첫째아이 200만원” 을 “첫째아이 1,000만원” 으로 하고, “1년·2년·5년간” 을 “9년·2년·5년간” 으로 하고, 같은 표제6호가목 및 제7호가목중 “부모와 자녀 모두가” 를 각각 “부모와 2명 이상 자녀 모두가” , “부모와 3명 이상 자녀 모두가” 로 한다.

별표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중 “기준으로” 를 “전,” 으로 하고, 같은 표제5호중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를 “전입일(2017. 1. 1. 이후) 전,” 으로 한다.

별표2 제2호 및 같은 표제5호 지원대상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별표2 제3호 및 같은 표제4호 지원대상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과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49세까지) 여성에 계만 적용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또는 결혼장려금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대상조건(출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경과 규정)의 경과일이 공포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기한일의 소급적용)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한일이 2016년 12월 31일부터 공포일 전까지 해당되는 경우에 소급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조건에 적격이어야 한다.

(뒷면)

세 부 신 청 사 항				
결혼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명 夫		생년월일	
	대상자의 성명 婦		생년월일	
	혼인일자		전입일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성 명 : 20 년 월 일
(인/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생 략) 1. - 3. (생 략) <신 설></p>	<p>제2조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결혼장려 지원</u>”이란 결혼당사자 <u>모 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u> <u>으 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u> <u>합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u> <u>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u></p>
<p>제3조 ① - ⑤ (생 략) <신 설></p>	<p>제3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결혼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3과 같</u> <u>다.</u></p>
<p>제4조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 <u>별표 1 및 별표 2--</u></p>	<p>제4조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결혼장려 지원사항 : 결혼장려금</u> 4.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1부터 별표 3까지--</u></p>
<p>제5조 ① (생 략) 1. --- <u>주민등록 관할 읍·면장---</u> ② ----- <u>별표 3--</u></p>	<p>제5조 ① (현행과 같음) 1. --- <u>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u> <u>주민등록 관할 읍·면장-----</u> ② ----- <u>별표 4--</u></p>
<p>제6조 ① - ③ (생 략) ④ ---- <u>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u> <u>건소장-----</u> 1. - 3. (생 략) ⑤ - ⑪ (생 략)</p>	<p>제6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u> <u>건소장, 농촌진흥과장-----</u>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⑪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출산장려금	가. <u>기준으로</u> — 나. <u>둘째아 이 이상 분 할 지 원</u> -----	· — <u>200만원</u>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u>1년2년5 년간</u> —)	1.출산장려금	가. <u>전, —</u> 나. <u>분할지원</u> -----	· — <u>1,000만원</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9년2년5 년간</u> —)
6.다둥이 안전보험	가. <u>기준으로</u> — <u>부모와 자 녀 모두가</u> -----	(생 략)	6 . 다 둥 이 안전보험	가. <u>전, —</u> <u>부모와 2명 이상 자녀 모 두가</u> —	(현행과 같음)
7.영유아 양육수당	가. <u>기준으로</u> — <u>부모와 자 녀 모두가</u> -----	(생 략)	7.영유아 양육수당	가. <u>전, —</u> <u>부모와 3 명 이상 자녀 모두가</u> —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 <u>기준으로</u> —	(생 략)	1. 전입세대 지원금	— <u>전, —</u>	(현행과 같 음)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 원금	--- <u>기준으로</u> — <u><신 설></u>	(생 략)	2 노인구 전 입세대 지원금	— <u>전, —</u> <u>(이 경우, 전입 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u>	(현행과 같음)
3. 전입 학생 지원금	(생 략) <u><신 설></u>	(생 략)	3, 전입 학생 지 원금	— <u>전, —</u> <u>(이 경우, 전입 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다)</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별표 2]</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지원대상</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td> <td>--- 기준 ---- <신 설></td> <td>(생략)</td> </tr> <tr> <td>5.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td> <td>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 <신 설></td> <td>(생략)</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 기준 ---- <신 설>	(생략)	5.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 <신 설>	(생략)	<p>[별표 2]</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지원대상</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td> <td>—전, 최근— (이 경우, 전입세대 자원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5.기업체 근로자전입지원금</td> <td>전입2017.1.1. 이후 전— (이 경우, 전입세대 자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전, 최근— (이 경우, 전입세대 자원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5.기업체 근로자전입지원금	전입2017.1.1. 이후 전— (이 경우, 전입세대 자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 기준 ---- <신 설>	(생략)																							
5.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 <신 설>	(생략)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전, 최근— (이 경우, 전입세대 자원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5.기업체 근로자전입지원금	전입2017.1.1. 이후 전— (이 경우, 전입세대 자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p>[별표 3] <신 설></p>	<p>[별표 3]</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지원대상</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결혼장려금</td> <td>결혼당사자 모 두가 혼인신고 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여자의 경우 가입기(만49세 까지) 여성에게만 적용</td> <td>-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실제 거주하면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한다)</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 두가 혼인신고 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여자의 경우 가입기(만49세 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실제 거주하면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한다)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 두가 혼인신고 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여자의 경우 가입기(만49세 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실제 거주하면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한다)																							
<p>[별표 4]</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지원대상</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산장려 지원</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전입세대 지원</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결혼장려 지원</td> <td><신 설></td> <td><신 설></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장려 지원	(생략)	(생략)	전입세대 지원	(생략)	(생략)	결혼장려 지원	<신 설>	<신 설>	<p>[별표 4]</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지원대상</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산장려 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전입세대 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결혼장려 지원</td> <td>결혼장려금</td> <td>행정과</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장려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정과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장려 지원	(생략)	(생략)																							
전입세대 지원	(생략)	(생략)																							
결혼장려 지원	<신 설>	<신 설>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장려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정과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 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적(안 제1조)
 - 나. 화재취약계층 정의(안 제2조)
 - 다. 지원범위,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5-880-2256, 2258 FAX 055-880-2249, e-mail ren0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 안전차단기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

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는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7-1155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조례 제17조(준수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준수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준수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유료화장실의 신고자 준수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유료화장실의 신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1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880-2584, FAX 880-2569, e-mail disk2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u>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u>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u> 2. 제16조에 따른 <u>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u> 3. <u>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u> 4. 그 밖에 <u>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 	<p>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u>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017 년 11 월 13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 명칭 개정 (안 제1조)
 - 나. 간사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제5항)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 년 12 월 3 일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 055-880-2122, FAX 055-880-2078, e-mail bobcsy@korea.kr)에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공고 제2017-1068호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및 과년도 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7. 10. 12. ~ 10. 26.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8)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반송자현황

읍면	송달주소	납부자명	부과대상번호		부과금		반송사유
			시설물	자동차	시설물(원)	자동차(원)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512번지 8호 흥천빌딩 2층 삼천포 자동차(주)	삼천포 화물(주)		경남81아4824외 11대		3,871,230	이사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23번길 15, (성석동)	한재춘		경남7도7203 외 1대		405,880	이사감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398번길 290-39(남방동)	정기락		92더9072		96,510	수취인불명
거창군	남상면 내촌길 113-7	김재덕		경남47가5120		22,850	이사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0 634동 103호(주공아파트)	이정랑		65노1360		260,470	재개발지역으로 수취불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0 634동 103호(주공아파트)	이정랑		96무7374		333,150	재개발지역으로 수취불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0 634동 103호(주공아파트)	이정랑		경남81무6033		340,180	재개발지역으로 수취불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대석동길61번길 1-36	조미정		서울83나1679		75,670	수취인불명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	대흥건설(주)		경남8더3614		702,490	이사

	길 4							
광양시	종마용소2 길 13-11	안부용		경남47 나2650		585,260	반송함 투 함	
광양시	종마용소2 길 13-11	안부용		경남47 나2650		22,900	반송함 투 함	
구례군	구례읍 봉 북길 11-1	김중철		97거 1035		160,610	이사	
구례군	구례읍 봉 북길 11-1	김중철		경남47 가9371		3,170	이사	
구례군	토지면 피 아골로 40-4	한농원 예사 (양진 천)		경남8즈 1543		363,200	수취인불 명	
김해시	삼계중앙로 22	김영문		경남81 러6082		340,990	주소불명	
담양군	창평면 의 평로 1	권기수		경남81 무4216		22,170	이사	
대구광 역시	서구 달서 천로 400-6	임채용		경남7모 4790		18,020	이사	
대구광 역시	남구 대덕 로 40길 56	(주)와이 지개발		82버 6435		91,720	수취인불 명	
대구광 역시	남구 대덕 로 40길 56	(주)와이 지개발		82버 6435		29,850	수취인불 명	
목포시	상동 251-1	고재호		14보 6553		14,940	주소불명	
밀양시	내이4길 20	유준호		39구 3356		35,450	주소불명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57 당감뜨 란채아파트 503동 1102호	곽현서		64노 1629		50,940	주소불명	
부산시	영도구 번 영길 128 (봉래동4가)	권준성		89오 5135		48,690	이사	
부산시	연제구 금 련로 18번 길 24	한재성		02주 4335		102,240	수취인불 명	
부산시	강서구 대 저로221번 나길 118	황용순		17나 5130		137,050	수취인불 명	
사천시	주공로12	서석주		경남81 다7216		52,380	이사	

사천시	사천읍 사 주길 36-6 401호	손명숙		27더 7096		114,230	주소불명	
사천시	곤명면 오 랑길 28-10	이승철		93주 9865		51,310	이사	
사천시	곤명면 오 랑길 28-10	이승철		84가 6419		110,430	이사	
사천시	곤명면 곤 명1로 100	(주)삼화 토건		97소 4941		11,070	이사	
산청군	시천면 남 명로 203-3	박춘희		경남81 머1297		224,780	수취인불 명	
산청군	단성면 목 화로1011번 길 15	최규대		경남37 가4662		146,810	이사	
영천시	창신1길 22(망정동, 청솔아파트 605호)	정한상		경남81 거9478		346,280	주소불명	
정읍시	산내면 능 교리 1270	최승호		93거 2823		50,970	수취인불 명	
진주시	축석로212 번길 9-2	김병재		경남7모 4044		96,490	이사	
진주시	모덕로30번 길 15	황진		70무 2580		21,330	장기간방 치	
합천군	용주면 우 곡계성길 171-13	최수영		경남7도 2501		248,380	이사	
고성군	대가면 우 흥갈천길 722	김희호		경남81 무3208		517,330	수취인불 명	
사천시	사남면 진 삼로 1225	정호건 설(주)		92로 2379		235,270	이사	
안양시	만안구 현 충로 18	이귀우		경남81 무4642		379,590	수취인불 명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40	최득진		17마 2991		38,350	주소불명	
부산시	북구 산성 로48번길 6-2	최춘경		97누 8066		25,290	이사	
여수시	율촌면 율 촌로 96	신용필		경남71 라2315		53,580	수취인불 명	
광양시	옥곡면 강 변로 281	박상태		09무 5415		66,640	수취인불 명	
목포시	북향로81번	오성민		경남81		558,370	수취인불	

	길 6			나4879			명	
목표시	북향로81번 길 6	오성민		경남81 나4879		32,060	수취인불 명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61-6	김중순		94노 2243		29,060	주소불명	
시흥시	신흥마을5 길 17	허만중		경남5라 9336		401,290	이사	
홍성군	충청남도홍 성군광천읍 733 ,B동 302호 (제 일원룸)	곽근영		경남81 무6248		35,680	주소불명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압로11 번길 11-10	유영현		39너 7250		19,700	수취인불 명	
인천광 역시	남동구간석 동 53 ,(간 석동)	이명희		90우 4739		12,930	주소불명	
창원시	진해구 안 청남로6번 길 9-19	이창규		06버 5389		18,590	주소불명	
구례군	간전면 백 운천길 52	한창호		89리 2268		16,230	이사	
광양시	다압면 죽 천길 19	주재형		79버 7119		3,790	이사	
광양시	옥곡면 옥 진로 690	남관우		경남81 무6467		5,810	이사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72 505호(범천 동)	임선택		12누 7554		31,020	불거주자 사망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10 ,(완월동)	이규남		97더 6565		21,080	수취인불 명	

2017년 하동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하동군에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연장공모하오니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8. .

하 동 군 수

공모명 : 상상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17. 8. 21 ~ 2017. 11. 20. 24:00까지

○ 자격 : 국민 누구나 (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일자리 창출 방안(노인, 청소년 등)
- 인구증가 방안
-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방안
-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
-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 등 제도개선 방안
- 예산절감 및 재정 확충 방안
- 기업의 사회공헌과 군정을 연계 및 협력 할 수 있는 방안
- 기타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계류 중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 구상이 유사 한 것
- 단순한 주의 환기나 진정, 건의 사항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 한 것

응모방법

○ 휴대폰 : 제안 담당자 휴대폰(010-9312-8731)

○ 인터넷

- 국민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제안·참여 →일반제안신청
- 공무원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8055>) → 공무원 제안
- 제안 담당자 E-Mail : my2521@korea.kr

○ 방문 및 우편

- 방문 : 하동군청(기획조정실) 및 민원과·읍면 설치 상상아이디어함 접수
- 우편 : (52333)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기획조정실 제안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관련 설명서 1부.

- ※ 온라인 응모 : 국민신문고, 이메일에 직접 입력(붙임 제안서 첨부)
- 방문 및 우편 : 붙임 제안서 작성 제출
- 휴대폰 : 카카오톡 또는 메시지(붙임 제안서 첨부)

□ 선정방법

- 1차 심사(담당부서)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심사
 - 실현가능성, 구체성, 법령 등을 고려하여 (불)채택 여부 결정
- 2차 심사 : 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여부 및 등급 결정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 발표시기/방법 : 2017. 12월 중순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 상
 -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 준수표창 수여
 - 부 상

등급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4명)
상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채택제안 중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동일인이 여러건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함.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시상금 지급. 			

- 상여금 지급
 - 제안 아이디어가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성과평가 후 그 효과의 일정비율 등 조례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 계획 임. 단, 다른 법률에 의거 지급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미지급 함.

□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자를 우선 적용 합니다.

- 동일인이 다수 응모가능 하나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 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부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하동군에 있습니다.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하동군청 기획조정실 담당관(☎055-880-2015)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공모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 · 지원()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p>< 작 성 요 령 ></p> <p>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p> <p>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p> <p>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p> <p>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p> <p>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국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p> <p>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국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p> <p>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p>	

☞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합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7 - 호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 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 방법	품종	어장 위치	면적 (ha)	면허 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 고
마을어업 제14호	마을 어업	-	굴 등	진교면 양포리 지 선	70.7	2017.10.16	2017.10.17 2027.10.16	양 포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1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15호	마을 어업	-	굴 등	진교면 술상리 지 선	78.8	2017.10.16	2017.10.17 2027.10.16	술 상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2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16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5.8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 도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3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17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78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 도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4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18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11.3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 도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5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19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12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 도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6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20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대도리 지 선	30.52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 도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7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21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노량리 지 선	26	2017.10.16	2017.10.17 2027.10.16	구 노 량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8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22호	마을 어업	-	굴 등	금남면 대치리 지 선	82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 치 어촌계장	마을어업 제9호 재개발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 방법	품종	어장 위치	면적 (ha)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마을어업 제23호	마을어업	-	굴 등	금남면 대치리 지선	7	2017.10.16	2017.10.17 2027.10.16	대치어촌계장	마을어업 제10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24호	마을어업	-	굴 등	금남면 송문리 지선	25.4	2017.10.16	2017.10.17 2027.10.16	송문어촌계장	마을어업 제11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25호	마을어업	-	굴 등	금남면 노량리 지선	0.78	2017.10.16	2017.10.17 2027.10.16	신노량어촌계장	마을어업 제12호 재개발
마을어업 제26호	마을어업	-	굴 등	금남면 중평리 지선	212	2017.10.16	2017.10.17 2027.10.16	중평어촌계장	마을어업 제13호 대체개발
하동양식 제43호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어류 등	금남면 중평리 지선	2	2017.10.16	2017.10.17 2027.10.16	중평어촌계장	하동양식 제28호 대체개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 함.
- 국립공원 협의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어업기간 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페어구 등) 및 폐기물 발생 등에 의한 해양오염이나 해상공원 경관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정화활동(어장 및 인근바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연안어선의 항로 및 인근 어장과와의 분쟁이 없도록 하며, 지선 주변에 어구류 등을 무단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협의기간 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 협의를 득하여야 하고,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본 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상 지장이 있거나 협의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상 필요한 보완요구 사항은 즉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어장구역에 특정도서(장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도서 자연자원이 무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어촌계원에 대한 별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을 할 수 있음.

-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등 해양공간에서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안 됨.
- 어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스티로폼 등의 폐기물, 죽은 물고기 등은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어장 및 주변해역을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함.
- 어장 관리선 등의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어장 관리선 등의 어장 진출입 시 주변해역을 이용하는 어선 등의 운항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노량항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시, 해당 면허권자는 동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가 격 기 준 일 : 2017. 07. 01.
- 2. 결 정 · 공 시 일 : 2017. 10. 31.
-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2,630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320필	고전면	205필	북천면	278필
화개면	181필	금남면	133필	청암면	123필
악양면	307필	진교면	239필	옥중면	159필
적량면	173필	양보면	54필	금성면	151필
횡천면	307필				

-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면별 m²당 가격
(토지지면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7. 10. 31. ~ 11. 29.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7 - 1133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해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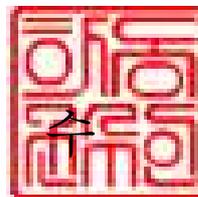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해제사유	관리자
		구역면적	총저수량 m ³	제당			
				높이	길이		
성평	경남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일원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중하쌍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일원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년 월 일

하 동 군



주민발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 공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청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나. 대표자 성명 : 이춘선, 고경남, 강정숙, 김보훈

다.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자 : 2017. 11. 13.(월)

라. 대표자 권한기간 : 2017. 11. 15. ~ 2018. 2. 14.(3개월)

마. 청구취지 및 이유

- 하동군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식재료 사용
- 군수의 급식경비 부담 의무화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부모 및 군민 참여 확대 등

바.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군수의 급식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17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7-1166호

주민발의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 공표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개요

- 가. 청구조례명 :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나. 대표자 성명 : 이춘선, 고경남, 강정숙, 김보훈
- 다.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자 : 2017. 11. 13.(월)
- 라. 대표자 권한기간 : 2017. 11. 15. ~ 2018. 2. 14.(3개월)
- 마. 청구취지 및 이유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확산
 - 하동군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사용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바. 주요내용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군수의
지원과 책임 규정
 -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17년 11월 15일

하 동 군 수